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추승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추승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태호, 송도호, 이승미,  
정지권, 우형찬, 이은주, 문병훈,  
이광호, 권영희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음.
-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하나의 생활교통 수단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12조의3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청소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**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6.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2조의3(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</u></li> <li><u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</u></li> <li><u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</u></li> <li><u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li> <li><u>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u></li> </ol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3에서 청소년(15~18세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① 15~18세 청소년,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③한부모가족, ④국가유공자 등의 총 감면비용

#### 나. 전제

- 추계의 전제
  - 추계기간 동안 공공자전거 이용건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  -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100% 감면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함
  - 독립유공자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산정함 (국가유공자에는 유족 수가 포함되어 있음)
  - 각 감면유형별 '가족' 혹은 '자녀'는 2017년 합계출산률 1.17명을 가정함
  - 각 감면유형별 인원의 12.3%가 공공자전거 이용인원으로 가정함

#### 다. 추계기간 : 2019년도부터 2023년

#### 라. 방법

- 추계의 방법
  - 서울시 공공자전거 15~18세 회원 수는 '17년말 기준 38,174명(19세 포함) 적용
    - ※ 공공자전거 15세 이상이 회원가입 가능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'17년말 기준 264,227명을 적용 (남성 122,245명, 여성 141,982명)
  - 한부모가족은 '17년말 기준 36,238명을 적용

(재가보호 36,119명, 시설보호 119명)

- 국가유공자는 '17년말 기준 116,835명을 적용

〈국가유공자 현황〉

(2017.12.31. 기준, 단위 : 명)

계	독립유공자 및 유족	상이군경 (전상/공상)	전몰순직 군경유족	무공 보국수훈자	4.19 유공자	5.18 유공자	고엽제 휴양의증자	특수임무 유공자	참전 유공자	기타국가 유공자
116,835	1,958	18,505	21,173	22,497	315	594	7,506	592	43,543	152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≙ 6,473,660천원(연평균 1,294,732천원)

= 15~18세 청소년감면액+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+ 한부모가족 감면액+ 국  
가유공자 감면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19	2020	2021	2022	2023	계
		세입	15~18세	342,420	342,420	342,420	342,420	342,420
제12조의3	조례안	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녀	632,607	632,607	632,607	632,607	632,607	3,163,035
		한부모가족	39,981	39,981	39,981	39,981	39,981	199,905
		국가유공자 및 유족, 가족	279,724	279,724	279,724	279,724	279,724	1,398,620
	소계(a)	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6,473,660
세출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1,294,732	6,473,660	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박종철

☎ 02-2180-7943

e-mail : [pjc99@seoul.go.kr](mailto:pjc99@seoul.go.kr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① 15~18세 청소년,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③한부모가족, ④국가유공자 등의 총 감면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≙ 6,473,660천원(연평균 1,294,732천원)

$$= 15\sim 18\text{세 청소년감면액} + \text{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} + \text{한부모가족 감면액} + \text{국가유공자 감면액}$$

### 나. 세부 산출 내역

○ 15~18세 청소년(서울시) 이용요금 감면액 ≙ 1,712,1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15~18세 청소년이용요금감면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

- 연간 15~18세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이용인원}(19\text{세 포함}) \times 1\text{인당 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률}(100\%)$$

$$= 38,174\text{명}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342,420\text{천원}$$

※ 1인당 연간 이용요금

$$= \text{총수입금}('18\text{년 예상}) \div \text{회원 수}('18\text{년 예상})$$

$$= 5,414,383\text{천원} \div 603,390\text{명} = 8,970\text{원}$$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서울시),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 ≙ 3,163,035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자녀이용요금감면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

-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전체 수급자 수} \times \text{공공자전거 이용률} \times 1\text{인당 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율}(100\%)$$

$$= 264,227\text{명} \times 12.3\%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291,524\text{천원}$$

※ 공공자전거 이용률

$$= \text{공공자전거 회원}('18\text{년 예상}) \div \text{서울시 총인구}$$

$$= 1,201,339\text{명} \div 9,776,305\text{명} = 12.3\%$$

※ 공공자전거 회원은 15세이상 가입조건이므로 10대 회원은 15~19세를 의미함

-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전체 수급자 자녀 수} \times \text{공공자전거 이용률} \times \text{1인당 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율(100\%)}$$

$$= (264,227\text{명} \times 1.17\text{명}) \times 12.3\%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341,083\text{천원}$$

※ 전체 수급자 자녀수는 합계출산률 1.17명임을 고려하여 1명으로 산정함

○ **한부모가족(서울시) 이용요금 감면액 ≍ 199,905천원**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한부모가족 이용요금 감면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

- 연간 한부모가족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전체 한부모가족 수} \times \text{공공자전거 이용률} \times \text{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율(100\%)}$$

$$= 36,238 \times 12.3\%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39,981\text{천원}$$

○ **국가유공자(서울시) 및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 ≍ 1,398,620천원**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국가유공자 및 자녀 이용요금 감면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19~2023년)

- 연간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전체 유공자 수} \times \text{공공자전거 이용률} \times \text{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율(100\%)}$$

$$= 116,835\text{명} \times 12.3\%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128,905\text{천원}$$

- 연간 국가유공자 자녀 이용요금 감면액

$$= \text{전체 유공자 자녀 수} \times \text{공공자전거 이용률} \times \text{연간 이용요금} \times \text{할인율(100\%)}$$

$$= (116,835\text{명} \times 1.17\text{명}) \times 12.3\% \times 8,970\text{원} \times 100\% = 150,819\text{천원}$$